

제211회 임시회

2003. 4. 17(목)

# 檢 討 報 告 書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專門委員 林 錫 圭

## 검 토 보 고 서

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2003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
- 기존의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이 공간을 여성1366상담실로 대체 운영하고
- 아울러 전통예절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.

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- 전통예절실 사용료 규정 및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여성공익법인을 각각 삭제하며
-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 요지입니다.

금번 제출된 충청북도 여성회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

-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업무를 위한 여성1366상담실 설치에 따라 기존의 전통애절실 및 그 시설사용료규정을 폐지 및 삭제하고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그러나 수강료·사용료 감면대상 중 “여성단체”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감면대상의 선별 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
  - \*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(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적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  - \*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(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기타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
- 향후 여성(계모임, 부녀회, 동창회, 동문회 등) 및 단체 등 시설 사용을 신청할 경우 그 대상·목적 등 그 선별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일정 기준이 필요한 바
  - \* “감면기준의 임의성 및 재량성” : 중앙부처, 도 감사 대상
-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